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26

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: 김승수 · 구자근 · 김상훈

김학용 • 박대수 • 박성민

백종헌 • 유경준 • 이주화

이채익 · 장동혁 · 정동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· 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.

반면에 2020년 「산림조합법」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·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으나,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선거운동 기간·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가목, 제24조제3항

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5조제5항 및 제36조).

법률 제 호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가목 중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"로 한다.

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제35조제3항제1호"를 각각 "제35조제4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,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2호에"를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2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4항제2호에"로 한다.

제35조제5항 중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·중앙회장과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은"을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·중앙회장은"으로 한다.

제36조 중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·중앙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공공단체등"이란 다음 각	1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단체를 말한다.	
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	가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및
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	합 및 중앙회
조합	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・기간・	제24조(선거운동의 주체・기간・
방법) ① ~ ② (생 략)	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	③
음 각 호와 같다.	
1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	1
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	
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	
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	<u>제</u> 35조제4항
<u>제1호</u> 에 따른 선출방법 중	<u>제1호</u>
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	
장선거: 제25조부터 제30조까	

- 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- 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 제5항제1호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1호 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 거: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
- 3.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 회장선거,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조제5항제2호 및 「수산 업협동조합법」 제4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: 제25조 · 제28조 · 제29조 ·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(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)
- 제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 제 (생 략)
 - ⑤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

 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

 장・중앙회장과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

2
제35조제4항
<u>제1호</u>
3
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
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선거
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45
조제5항제2호, 「수산업협동
조합법」 제46조제3항제2호
및 「산림조합법」 제35조제4
<u>항제2호에</u>
ll 35조(기부행위제한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⑤ <u>「</u> 宁
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산림조
합법」에 따른 조합장・중앙회
장은

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 · 부의 금품 제공제한) 「농업협동조 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에 따른 조합・중앙회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(이하 이 조에서 "조합등"이라 한다)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 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•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 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 여야 하며, 해당 조합등의 대 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 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.

제36조(조합장 등의 축의・부의
금품 제공제한)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
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
<u>· 중앙회</u>
<u>.</u>